



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

11월부터 신청하세요!

노인,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.

신청방법: 읍·면·동 주민센터 신청시기: 2017년 11월 1일부터

지원 대상 < 더 넓어진 “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지원”

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,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(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)

소득 인정액 기준

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$\text{소득인정액} = \text{소득인정액이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}$

구분	선정기준	기준액(원)					
	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
교육급여	기준중위소득 50% 이하	826,465	1,407,225	1,820,457	2,233,690	2,646,923	3,060,155
주거급여	기준중위소득 43% 이하	710,760	1,210,213	1,565,593	1,920,973	2,276,353	2,631,733
의료급여	기준중위소득 40% 이하	661,172	1,125,780	1,456,366	1,786,952	2,117,538	2,448,124
생계급여	기준중위소득 30% 이하	495,879	844,335	1,092,274	1,340,214	1,588,154	1,836,093

기준중위소득이란?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함

지원 대상 < “노인, 장애인 가구”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

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

부양의무자 기준

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

부양의무자의 범위

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,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
(아들·딸 사망시, 며느리·사위는 제외)

올해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(①,②)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

- ① 수급자: 노인 또는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.2.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
- ② 부양의무자: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*을 포함한 가구

*20세 이하인 경우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.2.3급(3급은 중복) 중증장애인

지원 내용 > 급여 항목별 체계적인 지원

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,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(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)

생계/의료/주거/교육 급여 상세 내용

- 01. 생계급여**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.
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.
- 02. 의료급여** 질병, 부상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의료급여 본인부담	구분	1차 (의원)	2차 (병원, 종합병원)	3차 (지정병원)	약국
1종	입원	없음	없음	없음	-
	외래	1,000원	1,500원	2,000원	500원
2종	입원	10%	10%	10%	-
	외래	1,000원	15%	15%	500원

- 1종** 근로무능력가구, 결핵질환자·희귀난치성·중증질환 등록자, 시설수급자
2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

- 03. 주거급여**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낮은 집을 수리해 드립니다.

- (1)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(월임차료+보증금 환산액)을 지원합니다.

기준임대료 (단위:만원)	구분	1급지(서울)	2급지(경기/인천)	3급지(광역시)	4급지(그 외)
1인 가구		20.0	17.8	14.7	13.6
2인 가구		23.1	20.0	15.8	14.7
3인 가구		27.3	24.2	18.9	17.8
4인 가구		31.5	28.3	22.0	20.0
5인 가구		32.5	29.4	23.1	21.0
6인 가구		37.8	34.7	26.2	24.2

- (2) 자가가구 자가가구의 주택 노후도(경·중·대보수)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.

구분	경보수	중보수	대보수
수선비용 (주기)	350만원 (3년)	650만원 (5년)	950만원 (7년)
수선예시	도배, 장판 등	창호, 단열 등	지붕, 옥실 등

- 04. 교육급여**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·수업료·학용품비·부교재비 등을 지원합니다.

교육급여 지원내용	지급대상	급여항목	지급금액(2017년)	지급방법
초등학생, 중학생	중학생, 고등학생	부교재비	1명당 41,200원	연 1회 일괄지급
		학용품비	1명당 54,100원	1,2학기 분할지급
고등학생	고등학생	교과서대	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	연 1회 일괄지급
		수업료	연도별·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	분기별 지급
		입학금		1학년 제 1분기 신청시 전액지급

신청 및 상담 문의

신청방법

- 01. 상담 및 신청**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(*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)
신청시기 2017년 11월 1일부터
- 02. 사실조사 및 심사** 가구 소득·재산 등 조사
- 03. 급여결정, 통지** 30일 이내 통지 (60일 이내까지 연장 가능)
- 04. 급여실시** 급여 결정 후 지급

상담 문의 및 상세안내

-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-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
- 주거급여 콜센터 1600-0777
-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)
- 교육급여 콜센터 1544-9654
- 교육부 홈페이지(www.moe.go.kr)
-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복지포털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